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41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이개호·박홍배·위성곤

조인철 • 박범계 • 민형배

천하람 · 김성회 · 박희승

황명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과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부자의 범위에 해당 지 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법률 제 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타인"을 "타인 또는 다른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람"을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주민"을 "주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법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	1
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	
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	
원을 마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u>사람</u> 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	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
하는 금전을 말한다.	,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	2
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	
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	
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u>사람</u> 에게 의뢰	사람 또는 법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u>인</u>
말한다.	<u>.</u>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	주체 및 대상) ①
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	
민이 아닌 <u>사람</u> 에 대해서만 고	<u>사람 또는 해당 지</u>
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 지)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생략)

-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생 략)
 -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 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 다.
 - ④ (생략)

<u>법인</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부의 제한) ①
타인 또는 다른 법인
<u> </u>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
지) ①
사람 또는 법인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시 권
<u>사람</u>
또는 법인
<u><삭 제></u>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 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 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 7. (생 략)
- ② (생 략)

반환) ①
1
주민 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소재한 법인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